

전주양현초등학교 출결관리 규정

[시행 2024.3.1.] [2024.2.29.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주양현초등학교(이하 “양현초”라 한다) 출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양현초 학생의 출석상황 및 체험학습 사유가 발생될 경우 적용한다.

제3조(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담임교사에게 사전연락을 하였다고 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제4조(체험학습))을 참고),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라)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마)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양식 1] 경조사 참가 확인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 부모의 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 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아) 생리인정결석 시 지각·조퇴·결과 3회를 1일로 산정하고 출결 산정기준은 월 1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을 인정한다. **[양식 2] 결석계** 제출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양식 2]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 가)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 나) 3일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진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4) 미인정 결석 (결석계 제출 필요 없음)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 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마)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 바)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중 기간을 초과한 결석 및 허위로 추진한 결석 등

- 5) 기타 결석 (학교장 승인 필요) [양식 2] 결석계 + 증빙서류 제출.
- 가)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지각·조퇴·결과

- 1) 지각: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2) 조퇴: 등교시간과 하교시간 사이에 하교한 경우
-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4) 위의 가. 2).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5) 지각·조퇴·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6) 같은 날짜에 지각·조퇴·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7)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8)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 9) 연 10회 초과의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의 경우 사유를 입력한다.

다. 출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결을 처리한다.

- 1)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초과인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장기결석 사유를 입력한다. 단, 병결의 경우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신체적인 질병에 한하여 진료과목과 대략적 치료 상황을 기재한다.(동일한 질병명에 대해 담임 간 기재 차이 여부 확인)
- 2) 단기결석인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으나 횟수가 5일 초과인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한다.

라. 학년 수료

-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2)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은 유예 처리후 정원외로 학적 관리한다.
- 3) 위 2)항의 경우 당해년도의 학년배정 및 학년진급이 불가하므로 다음학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및 출석 인정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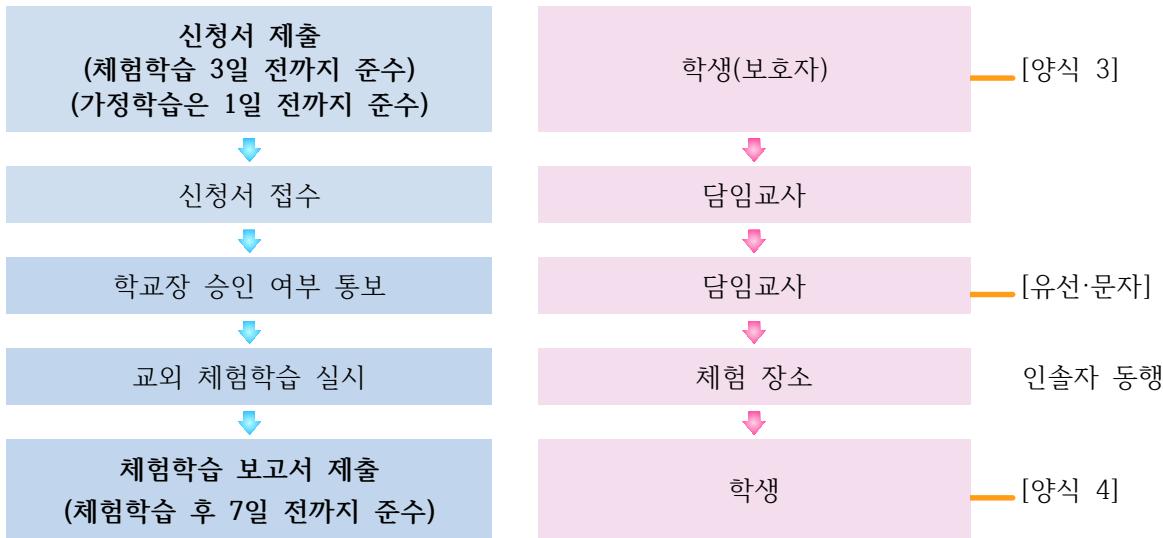
- 1) 개인 교환학습: 1개월(4주) 이내
- 2) 단체 교환학습: 2주일 이내(단, 해외 교환학습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관 시에만 출석으로 인정)
- 3) 교외체험학습 [양식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4]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 운영

-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활동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한다.
-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신청 절차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교외체험 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담임교사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보 받은 후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 학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양식 4]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및 지역내 감염병 확산 등)로 인하여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유선 및 온라인으로 사본 확인 후 추후 원본 제출 등) 인정 가능



-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정규수업시간 종료 전 외부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바.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 학교 홈페이지 → 학교 소식 및 각 학급 홈페이지에 양식 탑재

제5조(규정외) 이 규정외 사항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르며, 감염병(코로나19) 관련 출결관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등(특수)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6조(출석상황처리) 다음이 규정외 사항은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르며, 코로나19 관련 출결 관리는 코로나19 관련 초등(특수)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코로나 19 관련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음성으로 판정 된 경우 당일 출석 인정(의료기관 확인서 제출시에 한함)으로 처리한다.

부칙 <2019.3.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9.>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